

경남대학교 CCTV 설치 및 운영 지침

제정 2011.10.10.
1차 개정 2017. 4.17.
2차 개정 2018. 4. 9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,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과 제25조 제1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·제한에 근거하여 경남대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에서 설치하는 CCTV의 설치·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8.4.9>

제2조(용어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CCTV"라 함은 폐쇄회로텔레비전(Closed Circuit Television)을 말한다.
2. "화상정보"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3. "정보주체"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,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.

제3조(설치목적 및 원칙) ① 대학에서 설치하는 CCTV는 시설물 내 공공업무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각종 안전사고, 화재예방 및 시설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8.4.9>

②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치하여야 한다.

제4조(담당부서 및 책임관) ① CCTV와 관련된 유지보수 및 관리,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는 총무인사팀에서 관할하며, 총무인사팀에서는 CCTV와 관련된 유지보수 및 관리업무에 대한 사항은 위탁업체에 수행시킬 수 있다.<개정 2017.4.17., 2018.4.9>

② 제1항과 관련하여 책임관은 사무처장이 된다.<개정 2017.4.17.>

제5조(설치장소) CCTV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.

1. 건물의 주·부출입구
2. 건물의 복도
3. 자유열람실 내부 등
4. 기타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장소<개정 2018.4.9>

제6조(현황 비치) CCTV의 설치현황은 정문 종합상황실에 비치토록 하며, 총무인사팀에서 관리한다.<개정 2017.4.17.>

제7조(보호조치) ①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, 재생되는 장소는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.

② 대학은 CCTV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필요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<개정 2018.4.9>

③ 대학은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4.9>

④ 대학은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,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.<개정 2017.4.17., 2018.4.9>

제8조(보유 및 삭제) ①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DVR(Digital Video Recorder)에 저장하고 하드디스크의 용량 및 녹화시간에 따라 저장시간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한다.

② 저장기간이 경과된 화상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되고 현재의 화상정보가 녹화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CCTV는 24시간 동작을 원칙으로 하며 센서에 의하여 움직임이 있을 때만 녹화되어야 하며 화상정보의 저장기간은 최소 10일로 한다. (데이터 용량 및 선명도에 따라 저장기간은 다소 축소될 수 있다.)

④ 필요시 수집된 화상정보에 대하여 보유 목적이 소멸된 자료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화상정보를 수집했을 경우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.

제9조(수집 및 처리의 제한)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벗어나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된다.

② 설치된 CCTV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.

③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.

제10조(안내판의 설치) CCTV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한 안내판은 건물별 주출입구에 부착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.<개정 2017.4.17.>

1. 설치목적 및 장소

2. 촬영범위 및 시간

3.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

제11조(장비의 점검 및 유지보수) ① CCTV 담당부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장비의 상태 및 운영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.

② 장비의 정비 및 백업을 위하여 필요시 전문 관리업체를 활용할 수 있다.

제12조(열람 절차) ① 정보주체(민원인 등)인 경우는 <별지 제1호 서식>으로, 경찰서 등 타기관은 공문서로 열람을 청구하며, 대학(총무인사팀)에서 승인 후 열람할 수 있다. 다만, 아래사유에 대하여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.<개정 2017.4.17., 2018.4.9>

1.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2.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
3.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② 열람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<별지 제2호 서식>에 기록 후 CCTV를 열람한다.<개정 2017.4.17., 2018.4.9>

③ 대학은 열람 청구를 거부할 경우 < 별지 제3호서식>을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다.<신설 2018.4.9>

④ 세부적인 조치사항은 별표1「CCTV 열람 등 업무절차」를 따른다.<신설 2018.4.9>

제13조(준용규정) 이 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「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에 준한다.<개정 2017.4.17.>

제14조(비밀유지의무)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

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부칙

이 지침은 2011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7.4.17.)

이 개정 지침은 201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8.4.9.)

이 개정 지침은 2018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결	담 당	과 장	팀 장
재			

개인영상정보(<input type="checkbox"/> 존재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열람) 청구서				처리기한
※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.				10일 이내
청 구 인	성 명		전 화 번 호	
	생년월일		정보주체와의 관계	
	주 소			
정보주체의 인적사항	성 명		전 화 번 호	
	생년월일			
	주 소			
청구내용 (구체적으로 요 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 란할 수 있 음)	영상정보 기록기간	(예 : 2018.00.00., 18:30 ~ 2018.00.00., 19:00)		
	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	(예 : 한마관 1층 좌측 출입구(학생식당 방향)		
	청구 목적 및 사유			
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, 열람을 청구합니다.		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년 월 일 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 청구인 (서명 또는 인) 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경남대학교 총장 귀하 </p>				
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				

CCTV 열람 등 업무절차

①	CCTV열람 등 청구	·정보주체(민원인 등), 경찰서 등 타기관(문서로 요청) - 정보주체 : 개인영상정보 열람·존재확인 청구서 활용 (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서식) - 정보주체 외 열람·존재확인 불가 - 수사기관의 CCTV영상자료제공은 공문서로 요청 ※근무시간 이후 CCTV열람 등 청구 접수만 받음	근무시간: 총무인사팀 근무시간 이후: 종합상황실
↓			
②	적정성 검토	·CCTV 열람 등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 검토(개인정보보호법 등) -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여부 -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신체,재산의 이익을 위한 경우 ·관련근거: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4조(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)	주무부서: 총무인사팀
↓			
YES(열람 등 가능으로 검토) : 총무인사팀 / 정문상황실		NO(열람 등 불가능으로 검토) : 총무인사팀	
③	확인 절차 이행	·10일 이내에 처리 (열람 등이 가능한 일시·장소 사전 통보) ※총무인사팀→열람가능 결과 정문상황실 통보 →정문상황실에서 청구인과 열람시간 협의 ·정보주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 여부 확인 ※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	열람 등 요구 거부사유 확인 ·청구인에게 열람 등 요구 불가능한 사유 확인 -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-타인의 생명,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-그 밖에 재산과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경우 -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-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등 -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·관련근거: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
↓			
④	열람 등 절차 이행	·정보주체 이외의 영상정보는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 조치 후 열람 등 제공 -모자이크 처리 등을 통해 최소한으로 제공	연기·거부사유 통지 (거부시) ·열람 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 [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]



⑤ 대장 기록·정리	·조치사항을 대장에 기록 - 정보주체의 성명,연락처,열람 목적 등 ※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활용(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3호서식)
“중결”	
관련법령 및 유관기관 의견	<p>①정보주체가 영상에 있는 경우에 한해 적정성 검토 후 법적인 근거 등 문제점이 없는 경우 정보기관리자가 영상을 사전확인 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 후 제공 ·관련근거: 표준 개인정보 보호준지침【행정안전부 제2017-1호】 제46조</p> <p>② 경찰관을 대동한다고 CCTV열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을 넘어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(목적 외 이용 제한)를 위반 ·관련근거: 경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답변자료(2017.11.24.)【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(02-3150-1332)】 ※수사기관 CCTV영상자료제공 요청 시 공문서를 통하여 신청 접수 후 처리(파기일자 명시)</p> <p>③ CCTV 열람 등 요청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(10일)에 행정조치를 해야 함 ·관련근거: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항,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</p>